**고 소 장**

(고소장 기재사항 중 \* 표시된 항목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.)

**1. 고소인\*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 명  (상호‧대표자) | 나고소 | 주민등록번호  (법인등록번호) | 900101-1000000 |
| 주 소  (주사무소 소재지) | 아산시 신창면시 100-50 | | |
| 직 업 | 공무원 | | |
| 전 화 | 010-1111-1111 | | |
| 이메일 | abs@police.com | | |

※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, 대표자, 법인등록번호(또는 사업자등록번호),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,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,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.

※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,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.

**2. 피고소인\***

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
| 성 명 | 나피고 | 주민등록번호 | 모름 |
| 주 소 | 모름 | | |
| 직 업 | 건설업 | | |
| 전 화 | 010-2222-2222 | | |
| 이메일 | 모름 | | |
| 기타사항 | 계좌번호, 회사명(경대상사) | | |

※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, 특징적 외모,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

**3. 고소취지\***

(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 기재)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차용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4. 범죄사실\***

피고소인은 2024년 1월 18일 10시 6분경 신창면 소재 ㅇㅇ카페에서 고소인에게 공사 대금 300만원을 빌려주면 2주 뒤에 400만원을 주겠다고 말하였습니다. 그러나,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.

※ 범죄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, 장소, 범행방법,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,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,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**5. 고소이유**

피고소인과는 합의하지 않았으며,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합니다. 피고소인은 마치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차용이라는 가장을 빌려 우리를 기망하였습니다.

※ 고소이유에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,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, 명료하게 기재해야 합니다.

**6. 증거자료**

카카오톡 대화 내역, 계좌이체 내역

**7.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\***

(■ 해당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)

|  |  |
| --- | --- |
| ① 중복 고소 여부 |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없음 |
| ② 관련 형사사건  수사 유무 |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없음 |

※ ①,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,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‧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,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,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 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.

**8. 기타**

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

(고소내용에 대한 진실확약)

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,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.

2024년 2월 13일

고소인 (인)\*

제출인 (인)

※ 고소장 제출일을 기재하여야 하며, 고소인 난에는 고소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(무)인 해야 합니다. 또한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에는 제출인을 기재하여야 합니다.

아산경찰서 귀중

※ 고소장은 가까운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.